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스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스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 및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규약 및 기타규정을 절차에 맞게 의결하여 제·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¹⁾,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²⁾에 따라 규약 및 기타 제규정을 최신화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는 규약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반영이 요구될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도종목단체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5.19.>

2)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한다.

③ 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2016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의 통합 당시 경기도종목단체의 해산 및 재구성 당시 제정했던 규약을 2023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내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스키협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제·개정하여 종목육성팀에 승인받고 공정감사실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지출·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스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스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회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해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체육회 교부조건에 따라 「지방계약법」 및 기타 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제1항³⁾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⁴⁾에 따라, 계약체결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본회 「회계규정」 제4조(일반원칙)⁵⁾, 제42조(지출원인행위)⁶⁾ 및

3)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제4조(일반원칙) ①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체육회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5항⁷⁾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지출품의)를 통해 집행의사를 결정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결의를 통해 지출하는 등 공정하고 타당하게 집행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고 지출원인행위를 비롯한 지출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보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는 각종 보조금 집행 등 계약 및 회계 업무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이 3가지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가. 지출원인행위 관리 부적절

협회는 수감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2020년에는 국도비를 비롯한 자체비에서도 집행품의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지출결의서는 작성하였으나 집행품의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2년도에는 본회에서 보조하는 경기도종목단체운영지원에서 집행품의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실시하였으나 그 외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및 자체비는

-
1.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든 회계정보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증빙으로 하고 전표에 의한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3. 회계처리기준과 절차는 매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4. 회계처리과정에서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는 체육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6) 제4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7)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집행품의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지출원인행위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표1]과 같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정보가 되는 증빙서류가 없이 지출되는 등 국도비 및 자체비 지출에 있어 부적절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1] 지출증빙서류 누락 내역

년도	구매내역	금액	지출일자	세부내역
2020	사무실 책상의자	***,000	2020.**,**	견적서, 타견적서
	사무실 책상의자	***,000	2020.**,**	견적서, 타견적서
	사무실 책상의자	***,000	2020.**,**	견적서, 타견적서
	경기용 의류	*,***,500	2020.**,**	타견적, 물품사진
	크로스컨트리 장비	**,**,000	2020.**,**	타견적, 물품사진
	왁스	**,**,000	2020.**,**	타견적, 물품사진
	스키장비	*,***,000	2020.**,**	타견적, 수령증
2021	스키장비	**,**,000	2021.**,**	타견적
	스키장비	**,**,000	2021.**,**	타견적
2022	스키장비	**,**,000	2022.**,**	타견적, 수령증
	스키장비	**,**,000	2022.**,**	타견적, 수령증
	메달제작	*,***,000	2022.**,**	타견적

※ 품의,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별도 지적

나. 계약 없이 물품 구입

협회는 본회를 통해 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전국동계체육대회(대비)에서 [표2]과 같이 용품구매를 위해 다양한 금액을 집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하였다.

[표2] 계약없이 물품구매 내역

년도	업체정보		구매내역	금액	지출일자
	업체명	대표자			
2020	A업체	김**	경기용의료	*,***,500	2020.**,**

	B업체	김**	크로스컨트리장비	**.***,000	2020.**.**
	C업체	강**	왁스	**.***,000	2020.**.**
2021	C업체	강**	스키용품	**.***,000	2021.**.**
	B업체	김**	스키장비	**.***,000	2021.**.**
2022	C업체	강**	스키장비	**.***,000	2022.**.**
	D업체	박**	스키장비	**.***,000	2022.**.**

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협회는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⁸⁾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해야 하며 계좌이체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계좌이체라는 지출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표3]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년도	업체정보		구매내역	금액	지출일자
	업체명	대표자			
2020	E업체	홍**	사무실 집기류	***,000	2020.**.**
	E업체	홍**	사무실 집기류	***,000	2020.**.**
	-	유**	사무실 집기류	***,000	2020.**.**
	루****	김**	경기용의료	*,***,500	2020.**.**
	루*****	김**	크로스컨트리장비	**.***,000	2020.**.**
2021	삼****	김**	세탁기 수리 (개인발급 *****)	***,000	2021.**.**
2022	한****	김**	세척기 세제구입	** ,000	2022.**.**
	노**	김**	비대수리	** ,000	2022.**.**

- 8)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스키협회장은

위 사항에 대하여 2023년도 품의 및 집행에 있어 원인행위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및 자체비 지출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기 바라며, 현재 지적된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일체를 조속히 취합하여 조치결과를 본회로 보고하기 바라며, 향후 회계관리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각종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스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스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수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등에 따라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 각종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의 각종위원회를 설치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각종위원회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협회는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임에도 전문체육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경기도내 선수, 동호인 및 지도자 등의 상·벌 기능을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스키협회장은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고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의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고민하고 개선하여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재정정보증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스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스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 「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회계 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본회 「회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정보증)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정보증에 가입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직원에게 해당하는 회장, 사무국장의 재정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스키협회장은

직무관련 재산상 사고에 대비하여 협회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소신과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 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